**물품 공급 계약서**

매도인 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매수인 주식회사 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계약당사자간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 계약서를 체결한다.

제 1 조 【매매물 내역】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품목 | 수량 | 단가 | 금액 | 비고 |
|  |  |  |  |  |

제 2 조 【계약금액】

일금○○○원정(￦○○○) ※ 부가세포함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차수 | 단가 | 금액 | 비고 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
제 3 조 【납품기한】

발주 후 ○○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 단 긴급 배송인 경우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제 4 조 【인도조건】

물품의 인도장소는 “을”의 지정장소로 하며 당해 장소까지 운임 및 기타소요비용 일체는 “갑”의 부담으로 한다.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차수 | 표준운임비 | 기타비용 | 인도장소 | 비용부담 | 비고 |
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

제 5 조 【지체배상금】

납품기일 내에 물품의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“을“에게 납품연기 승인을 서면상으로 신청해야 하며, 이때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에 대해 ○○%의 지체배상금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. 단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“을”이 인정할 때는 지체배상금을 면제 할 수 있다.

제 6 조 【검 수】

물품의 검수는 “을”이 지정하는 검수인이 “을”의 지정장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.

제 7 조 【대금 지급방법】

“을”은 본 건 납품과 동시에 선금 일금○○○원정(￦○○○)을 갑에게 지불한다. “을”은 전조의 검사완료 후 1개월 후 일금○○○원정(￦○○○), 2개월 후 일금○○○원정(￦○○○)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.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구분 | 선금 | 중도금 | 잔금 |
| 1개월 후 |  |  |  |
| 2개월 후 |  |  |  |

제 8 조 【하자보증】

1. “갑”은 계약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○○개월간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, 또한 비용은 “갑”의 부담으로 한다.
2.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 “계약물품”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“을”에게 공급한다. 단 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 또한 “을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계약물품에 대한 정비, 보수 용역을 제공한다.

제 9 조 【물품의 안전책임】

물품의 안전책임은 물품을 인도 시까지는 “갑”이 모든 책임을 지며, 물품 인도 후 검수가 완료된 후는 “을”의 책임으로 한다.

제 10 조 【계약의 해제】

1. 물품내용이 계약과 상이할 때
2. 납기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,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어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
3. “갑”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4. 본 건의 진행 중 “을”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파기 시 “갑”에게 기 지불된 계약금, 중도금 및 계약과 관련하여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지불한 대금은 “갑”에게 귀속된다.

제 11 조 【기 타】

1. 본 계약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“갑”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2. 본 계약상 “갑” “을”간에 이의가 있을 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20 년     월    일

**“갑”** 주 소 :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인)

연 락 처 :

**“을”** 주 소 :

회 사 명 :

대 표 자 : (인)

연 락 처 :